



보도시점

2024. 7. 2.(화) 11:00
7. 3.(수) 조간

배포

2024. 7. 2.(화) 09:00

농지에 스마트팜 설치기간 확대, 농어업인 주택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 가능

-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7월 3일부터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어업분야 근로자 거주시설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이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첫째, 농작물의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양분·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의 확산을 위해 관계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당초 최대 8년에서 16년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작물재배사 시설 기준도 신설하여 표준화된 시설에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였다.

둘째,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농어촌은 공단 지역 등과 달리 주거시설이 부족하고 읍·면 소재지 등에 비슷한 주거시설이 있어도 농장에서 멀어 불편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가능한 농어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부지 면적도 660㎡이하에서 1,000㎡이하로 확대하였다.

농식품부 윤원섭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농업인의 농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요약

담당 부서	농업정책관실 농지과	책임자	과 장	이정석 (044-201-1731)
		담당자	사무관	이상진 (044-201-1739)

□ 추진 배경

- 농어촌에서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공단 지역과 달리 주거시설이 부족하여 농어업인 주택을 거주시설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작물재배사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 확대 및 시설 기준 마련 등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24.7.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정함

□ 주요 내용

- 농업진흥구역 내 허용행위 추가(안 제29조 제4항 제2호 개정)
 - 농어업인주택을 농어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 활용 허용 및 설치 가능한 부지 면적 확대(당초 : 660㎡이하 → 개선 : 1,000㎡이하)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 확대(안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개정)
 -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 작물재배사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 확대*
 - * 당초 : 최대 8년(최초 5년, 연장 3년) → 개선 : 최대 16년(최초 7년, 연장 9년 : 3년 × 3회)
-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작물재배사 시설 기준 신설(안 제38조 제4항 신설)
 - 인공 광원(光源)을 사용하여 작물을 생산할 것
 -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상태에 관한 감지 설비를 갖추는 것
 -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자동제어 시스템[양액(養液), 관수(灌水), 에너지 및 공조(空調) 자동제어 설비를 포함한다]을 갖추는 것